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7
------	-----

제출년월일 : 2003. 3. 19.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에서 매년 대표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고자 두개의 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관람료를 패키지로 하여 기존의 관람료 징수·요금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자연사박물관·수석전시관 동시관람료 적용(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64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
-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 제2003-63(2003. 2. 21~3. 13),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자연사박물관 · 수석전시관 동시관람 요금표(제7조의2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1,500	1,000	700
단 체	1,400	800	5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 2(전시관등의 관람료) ① 전시관 등의 관람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신설></u></p>	<p>제7조의2(전시관 등의 관람료)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u>다만,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한다.</u></p>